



즉시 배포용: 3/19/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 주와 뉴욕시 변호사 협회는 의원들의 가의 소득의 전체 공개를 위한 CUOMO
주지사와 뉴욕 주 의회의 계획에 대한 지원 발표**

**뉴욕 변호사 협회: “우리는 이 제안이 투명성과 진정한 변호사- 고객 관계의 윤리적 매개
변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잡아준다고 믿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그들이 받는 모든 외부의 소득을 완전히 공개하기
위해 주 의원들에게 요청하는 그의 제안에 대한 뉴욕 주와 뉴욕시 변호사 협회의 지원
발표에 대한 응답으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소한 누가 무엇을 어디에 외부 고용이 되는지 알 때까지 뉴욕 시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행정부와 뉴욕 주 의회가 이를 시행함으로써 전례 개혁이 진전을
보일 것입니다. 뉴욕 주와 뉴욕시 변호사 협회의 우리의 제안이 변호사와 고객 특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이것이 왜 법제화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변명을 없애줄
것입니다.

“이 조직은 그들의 직업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제안에 대한 그들의 지원에
매우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통과하고 우리의 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도록 입법부의 양 측에서 내 동료들과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뉴욕시 변호사 협회 회장 Debra L. Raskin의 성명

“이 정세에서, 대중들이 선출 관리에 높은 레벨의 신뢰도를 가질 것이라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중은 그 선출된 공무원이 정부에서 공공의 이익에 일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 하나의 핵심
요소는 외부 소득의 공개입니다.

“2010 년, 뉴욕시 변호사 협회는 보고서 [<http://bit.ly/1FsJZYA>] 를 발행했고 여기서 뉴욕의
의원 정보와 금액을 공개야 하고 – 특히 지불하는 클라이언트의 정체를 포함해서 –
공헌된 서비스의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대중의 감시에서 변호사 의원을 배제하는 근거는 없으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특권의 주장은 그 제한된 상황에서 심사 될 수 있도록 공개 요구에 대한 대중의 이득이 고객의 비밀방지 이득보다 높을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시스템이 개발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2011년의 공공 무결성 개혁 법안(Public Integrity Reform Act)은 의원들이 자신의 클라이언트 공개에 대한 제한적인 규칙을 세우는 것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공개 수준이 불충분했으며, 대중이 가져야 할 감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집행 예산 법안(Executive Budget legislation)의 제안은 City Bar’s 2010 report에서 고려된 외부 소득의 공개 수준을 설정할 것이며, 우리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준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내며, 또한 국회의 동의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의회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전체에 외부 소득 공시 규정 제안을 채택하도록 의회를 촉구합니다.

“예산 공개 제안과 다른 윤리 문제에 대해 오늘 변호사 협회가 발표한 전체 연설문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bit.ly/1FC6SZp>.”

뉴욕 주 변호사 협회 성명

“뉴욕 주 변호사 협회가 정부의 투명성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자격이 유지되는 변호사의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안도 적절하게 클라이언트 기밀성을 보호하지 않는 한 제정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중요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재정 공개를 강화하여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공개에 대한 주지사의 제안을 지원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